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근거 등 마련 〉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863호)

2025. 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2  |
| 1.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근거 등 마련 .....    | 2  |
| ※ 참고자료 .....                   | 12 |
| 1.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 개요 ..... | 12 |
|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도 개요 .....      | 13 |
|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 .....    | 14 |

## I. 제안경위

2025년 9월 10일 김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수립 근거 등 마련

개정안은 ①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복구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하고, ②상습침수지역의 지정 근거와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수립·시행 근거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12조의2).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 2.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2. (현행과 같음)<br><u>2의2. “상습침수지역”이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u> |
| 3. ~ 5. (생략)<br>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생략)<br><u>&lt;신설&gt;</u>  | 3. ~ 5. (현행과 같음)<br>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br><u>③ 국가는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국민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신 설>

제12조의2(상습침수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상습침수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상습침수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때에는 상습침수지역 지정 후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  |                                                                                                                                                                                                                                                           |
|--|-----------------------------------------------------------------------------------------------------------------------------------------------------------------------------------------------------------------------------------------------------------|
|  | <p>④ <u>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⑤ <u>환경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지거나, 지정 유지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u></p> <p>⑥ <u>상습침수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p> |
|--|-----------------------------------------------------------------------------------------------------------------------------------------------------------------------------------------------------------------------------------------------------------|

우리나라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되는 기후특성<sup>1)</sup>과 호우로 인한 유량 증가가 하천유역에 집중되기 쉬운 지형적 특성을 아울러 지닌 데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집중호우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sup>2)</sup>에서, 특히 도시지역은 불투수면<sup>3)</sup>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도심지 지방하천·소하천은 국가하천·대하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하여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sup>4)</sup>

1) 기상청이 전국 62개 지점에 대해 1991~2020년 간의 평년 강수량을 산출한 결과, 연 강수량 1306.3mm 중 여름 강수량이 710.9mm로 54%를 차지하였음. 기상청 날씨누리-관측·기후-한국 기후특성([www.weather.go.kr/w/obs-climate/climate/korea-climate/korea-char.do](http://www.weather.go.kr/w/obs-climate/climate/korea-climate/korea-char.do)) 참조

2) 기상청,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2020. 7.)」, p.291.

3) 불투수면(불투수층):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건물 등을 말함. 불투수면이 많으면 땅에 흡수되는 빗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중 호우나 태풍 시 도심 침수를 야기하는 원인이 됨

[ 표 ] 전국 시·도별 불투수면 비율

| 지역      | 불투수면 비율(%) | 불투수면 면적(km²) | 행정구역 면적(km²) |
|---------|------------|--------------|--------------|
| 서울특별시   | 52.06      | 315.35       | 605.7        |
| 부산광역시   | 27.27      | 213.88       | 784.23       |
| 대구광역시   | 21.04      | 185.19       | 880.08       |
| 인천광역시   | 21.6       | 238.45       | 1,103.83     |
| 광주광역시   | 24.47      | 121.97       | 498.36       |
| 대전광역시   | 20.21      | 109.1        | 539.9        |
| 울산광역시   | 13.69      | 145.4        | 1,061.99     |
| 세종특별자치시 | 10.72      | 49.89        | 465.21       |
| 경기도     | 13.26      | 1,360.89     | 10,264.77    |
| 강원도     | 2.83       | 476.61       | 16,819.99    |
| 충청북도    | 6.03       | 447.14       | 7,414.05     |
| 충청남도    | 9.02       | 746.01       | 8,268.88     |
| 전라북도    | 7.52       | 608.88       | 8,096.45     |
| 전라남도    | 6.36       | 791.09       | 12,438.13    |
| 경상북도    | 4.73       | 900.49       | 19,037.75    |
| 경상남도    | 7.68       | 811.45       | 10,559.41    |
| 제주특별자치도 | 11.67      | 217.67       | 1,865.98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이에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sup>5)</sup>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되어 2024년 3월부터 시행 중임.

4) 2020. 8월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 지하차도·아파트 침수피해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보고서 제62호: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2020. 12. 21.)」, p.9~10. 참조. 지방하천·소하천의 국가하천·대하천 대비 상대적 관리부족에 관해서는 p.34. 참조.

5)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등을 고려<sup>6)</sup>하여 준설이나 제방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sup>7)</sup>(이하 “특정도시하천<sup>8)</sup>”이라 함)에 대해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sup>9)</sup>,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특정도시하천 유역에서 침수방지시설<sup>10)</sup> 설치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

- 6) **법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시침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기후변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인구, 사회기반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도시침수에 대비하여 예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7)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8)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 9) **법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2. 침수 현황 및 지역 특성
  3.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홍수량
  4. 홍수량 분담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
  5. 특정도시하천 정비 등에 관한 사항
  6. 유역 내 침수방지시설의 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7. 도시침수예보 및 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비용의 산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 ③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침수방지시설”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608개 시설에서 총 1조 540억 8,4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수해 발생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연도   | 재난명                      | 국가하천 |        | 지방하천  |         |
|------|--------------------------|------|--------|-------|---------|
|      |                          | 시설수  | 피해액    | 시설수   | 피해액     |
| 2020 | 합 계                      | 153  | 48,916 | 1,276 | 147,274 |
|      | 7.28~8.11 호우             | 148  | 48,723 | 1,011 | 128,622 |
|      |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 5    | 193    | 265   | 18,652  |
| 2021 | 합 계                      | -    | -      | 209   | 14,673  |
|      | 7.5~7.8 집중호우             | -    | -      | 98    | 7,314   |
|      |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 -    | -      | 111   | 7,359   |
| 2022 | 합 계                      | 25   | 3,234  | 543   | 131,252 |
|      | 8.8~8.17 집중호우            | 23   | 2,970  | 427   | 58,803  |
|      | 제11호 태풍 힌남노              | 2    | 264    | 116   | 72,449  |
| 2023 | 합 계                      | 42   | 17,560 | 735   | 162,669 |
|      | 6.27.~7.27. 호우           | 42   | 17,560 | 616   | 147,082 |
|      | 제6호 태풍 카눈                | -    | -      | 119   | 15,587  |
| 2024 | 합 계                      | 10   | 6,088  | 581   | 68,142  |
|      | 7.8.~7.19. 호우            | 9    | 6,084  | 452   | 61,713  |
|      | 9.19.~9.21. 호우           | 1    | 4      | 129   | 6,429   |
| 2025 | 합 계                      | 78   | 10,676 | 939   | 219,162 |
|      | 7.16.~7.20 호우            | 78   | 10,676 | 939   | 219,162 |
| 계    |                          | 386  | 91,750 | 5,222 | 962,334 |

자료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복구 비용으로 약 7조원이 투입되었으나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2025년에도 전국적인 호우로 인해 약 2조 7000억 규모의 복구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sup>11)</sup>.

나.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1) “최근 5년간 전국 138명 사망, 복구비 7조원...” 핀포인트 뉴스, 2025. 9. 11

또한 최근 5년간 집중 호우 및 도시지역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을 보면, 경북이나 충북 등 일부 지역에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바, 재난 발생 후 복구 방식보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침수지역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표] 최근 5년간 집중호우 및 도시지역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현황

(단위: 명)

| 시 도 | 합계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 합 계 | 138 | 46   | 3    | 30   | 53   | 6    |
| 서 울 | 8   |      |      | 8    |      |      |
| 부 산 | 7   | 5    |      |      | 2    |      |
| 광 주 | 2   | 2    |      |      |      |      |
| 대 전 | 1   | 1    |      |      |      |      |
| 세 종 | 1   |      |      |      | 1    |      |
| 경 기 | 14  | 8    |      | 8    |      |      |
| 강 원 | 3   |      |      | 3    |      |      |
| 충 북 | 31  | 13   |      |      | 17   | 1    |
| 충 남 | 9   |      |      | 2    | 3    | 4    |
| 전 북 | 2   | 2    |      |      |      |      |
| 전 남 | 16  | 11   | 3    |      | 1    | 1    |
| 경 북 | 40  |      |      | 11   | 29   |      |
| 경 남 | 4   | 4    |      |      |      |      |

자료: 행정안전부, 김대식의원실

이에 개정안은 ①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복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②반복적인 도시침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며, ③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구역에 대해 사전에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안 제2조제2호의2 및 제12조의2의 “상습침수지역”이 「자연재해대책법」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침수위험지구)”와 목적 및 기능적 측면에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sup>12)</sup>하고, 5년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점검 및 관리하도록 규정<sup>13)</sup>하고 있음.

1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3)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면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천 범람 등으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832개소를 ‘침수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24년 말, 현재 기준)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 중(참고자료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인 바,

개정안에 따라 “상습침수지역”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 침수피해 위험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관리, 정비대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지자체 업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문 의 처        |
| 02)6788-5547 |

## □ 사업배경

- 여름철 국지성 호우가 일상화되어 투수면적이 적은 도시지역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구도심지는 정비가 어려워 대응에 한계
- 「도시침수방지법<sup>\*</sup>」 시행(‘24.3)에 따라 도시하천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법정계획(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필요

### < 도시침수방지법 중 기본계획 관련 사항 >

- ▶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구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제6조(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특정도시하천 구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15년 감사원 지적(도시침수 계획사업 비연계로 비효율) 이후 관련 법안이 추진 되어왔으나, 폐기 반복

⇒ 기존대책(하천기본계획·하수도종합정비계획 등)을 연계·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대상지 선정 중(~'25.12)

## □ 「도시침수방지법」 관련 주요사항

| 구분    | 내 용                                                                                                                                               |
|-------|---------------------------------------------------------------------------------------------------------------------------------------------------|
| 기본 원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현저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에는 과거 최대강우량 등을 고려하 침수방지시설 설치 노력</li> <li>▶ 도시침수 예보체계 구축, 비상대응방안 마련</li> </ul> |
| 기준강화  | ▶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강화된 기준 적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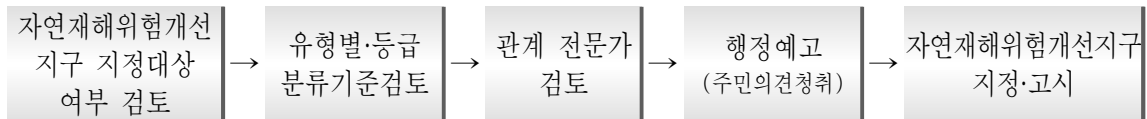
- 도시침수방지 계획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설계기준 등 원칙 제시

- 종합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수립주체 및 추진내용 제시

| 추진주체           | 추진내용                                                                                                                                                              | 비고                                                                                                                        |
|----------------|-------------------------------------------------------------------------------------------------------------------------------------------------------------------|---------------------------------------------------------------------------------------------------------------------------|
| 기후에너지<br>환경부장관 | <b>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li> <li>▶ 침수방지시설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li> <li>▶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 강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주기(재검토 5년)</li> <li>- 관계중앙행정기관, 지자체장 의견 청취</li> <li>-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li> </ul> |
| 기후부장관<br>지자체장  | <b>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시행계획 수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계획 수립</li> <li>▶ 공사방법에 관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등 작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제처리</li> <li>- 설계기준 및 설계빈도 강화 가능</li> </ul>                                     |

14)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지정목적)**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재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
-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지정절차)**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및 재해위험시설에 대하여 지구로 지정·관리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 침수위험지구 지정기준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정비계획 수립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계획기간)**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
  - ※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 단위 집행계획을 수립,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

#### <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                           |                     |
|---------------------------|---------------------|
| ▶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 재해예방 효과 분석        |
| ▶ 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 현황 | ▶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
| ▶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
| ▶ 기후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 투자우선순위 및 연차별 정비계획 |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                     |

1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고자료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현황<sup>16)</sup>

○ 2024년 12월 기준 3,001여 개 지구를 지정·관리 중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정비<br>완료 | 정비대상  |          |          |          |          |          |          |          |
|----|-------|----------|-------|----------|----------|----------|----------|----------|----------|----------|
|    |       |          | 소계    | 침수<br>위험 | 붕괴<br>위험 | 유실<br>위험 | 취약<br>방재 | 고립<br>위험 | 해일<br>위험 | 상습<br>가뭄 |
| 합계 | 3,001 | 1,962    | 1,039 | 832      | 43       | 42       | 34       | 24       | 45       | 19       |
| 서울 | 16    | 14       | 2     | 2        | -        | -        | -        | -        | -        | -        |
| 부산 | 71    | 47       | 24    | 20       | -        | -        | -        | -        | 4        | -        |
| 대구 | 53    | 38       | 15    | 15       | -        | -        | -        | -        | -        | -        |
| 인천 | 16    | 16       | -     | -        | -        | -        | -        | -        | -        | -        |
| 광주 | 42    | 30       | 12    | 7        | -        | -        | 5        | -        | -        | -        |
| 대전 | 5     | 1        | 4     | 4        | -        | -        | -        | -        | -        | -        |
| 울산 | 36    | 25       | 11    | 11       | -        | -        | -        | -        | -        | -        |
| 세종 | 17    | 11       | 6     | 6        | -        | -        | -        | -        | -        | -        |
| 경기 | 117   | 74       | 43    | 39       | 2        | -        | 2        | -        | -        | -        |
| 강원 | 370   | 274      | 96    | 55       | 6        | 9        | 9        | 13       | 3        | 1        |
| 충북 | 263   | 176      | 87    | 69       | 3        | 4        | 1        | 4        | -        | 6        |
| 충남 | 212   | 117      | 95    | 85       | 1        | 1        | 1        | 2        | 4        | 1        |
| 전북 | 384   | 272      | 112   | 97       | 9        | -        | 1        | 2        | 1        | 2        |
| 전남 | 408   | 245      | 163   | 125      | 11       | 10       | -        | -        | 15       | 2        |
| 경북 | 478   | 290      | 188   | 144      | 8        | 14       | 14       | 1        | 4        | 3        |
| 경남 | 407   | 246      | 161   | 137      | 2        | 3        | 1        | 2        | 12       | 4        |
| 제주 | 106   | 86       | 20    | 16       | 1        | 1        | -        | -        | 2        | -        |

※ 행정안전통계연보(2025, 행정안전부)

16)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